

I. C. N.

News Release

No. 1 (January 1972)

I.C.N.은 “U.N.의 인권편리의 선언”을 지지한다.

I.C.N.의 회원국들은 UN의 인권편리의 선언(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목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작년 1971년 7월 Ireland의 Dublin에서 열린 국제 대표자회의 (CNR)에 포인 각 회원국의 회장들은 “인권편리의 선언”을 채택하고 이 원칙을 지원하는 방안을 토의 하였다.

I.C.N.은 74 회원국이 전 세계의 50만 이상의 간호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I.C.N.이사회는 Dublin의 CNR에 다음과 같은 결의를 제출하여 CNR이 이런 결정을 보게된 것이다.

“간호사업은 세계적인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국적, 인종, 피부색, 정치, 성별 및 사회적 지위 여하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없다. U.N.에서는 “인권편리의 선언”을 인쇄하여 모든 회원국이 이 선언문을 널리 알리고 선전 활용하며 특히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읽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I.C.N.은 “인권편리의 선언”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이 이 선언문의 목적을 지원하고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취 하도록 결의 하였다.”

CNR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하였다.

“가족과 어린이의 보호는 세계적인 사회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 수와 터울을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간호원의 역할의 일부는 이 권리를 실천하는데 있어 가능한한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

U.N.의 “인권편리의 선언”을 I.C.N.이 정식으로 채택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인권편리의 원칙에 대한 인식은 간호원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I.C.N.정관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있다 즉 “간호사업은 세계적인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국적, 인종, 피부색, 정치, 성별 및 사회적 지위 여하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I.C.N.의 윤리헌장(Code of Ethics)과 간호교육, 간호업무 및 간호원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에 관한 성명에 나타나 있다.